

보도 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0. 7. 16 (목) / 총 2매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	담당	· 과장 신광호, 팀장 조성태 · ☎ (044) 201-3423
	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	담당	· 과장 서정훈, 팀장 박현정 · ☎ (044) 205-3839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전국 95% (서울의 80%)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매일경제 등 7.16(목)) >

- ◆ 1주택자 증세 없다더니... ‘稅폭탄’ 고지서에 부글부글
 - 강동 39%, 양천 20% 등 서울 전지역 재산세 확 뛰어
 - 재산세 부담급증 이유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

□ 전체 공동주택의 95.2%(1,383만호 중 1,317만호)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‘20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하였으며,



* 전체의 4.8%인 시세 9억원 이상만 시세변동분과 함께 현실화 제고를 반영

- 이에 따라,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.96%로, ‘19년 2.87%에 비해 약 0.9%p 낮아졌습니다.
- 서울 기준으로,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% 수준이며, 나머지 80%(253만호 중 201만호)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하여 ‘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.

< ‘20.1.1 기준 공시 대상 시세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(단위 : 만호) >

구분	전체	3억 미만	3~6억	6~9억	9~12억	12~15억	15~30억	30억이상
전국	1,383만호	935	302	80.3	29.6	14.1	20.6	2.0
서울	253만호	86.6	71.8	42.6	19.4	10.9	19.4	2.0

- 재산세에 대하여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공정시장가격비율(주택공시가격의 60%를 과세표준으로 적용),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 -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이 5%, 공시가격 3억원 초과~6억원 이하는 10%,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%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됩니다.
 - 또한, 현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,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
 - 아울러, 정부는 투기성이 없고,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 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* 20대 국회에서 1주택 10년 이상 보유 65세 이상 고령 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

 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조성태 팀장(☎ 044-201-3423) 또는 행정안전부 박현정 팀장(☎ 044-205-383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-